

- 우편번호 : 59116
- 주 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완도읍 해변공원로 162,
해양수산과학원 운영지원과
- 누 리 집 : <https://ofsi.jeonnam.go.kr/>
- 전화번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양수산과학원 (061-550-0633)
- 수요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양수산과학원 민물고기연구소(061-393-8134)



수의계약 전자견적 제출 안내 공고

<해양수산과학원 민물고기연구소 2026년 내수면 우렁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 쏘가리 구입 단가계약>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다음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도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하면서 입찰에 참여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收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운영지원과(☎061-550-0633), 감사관실(☎061-286-2373) 및 홈페이지
(www.redwhistle.org/report)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수익계약 전자견적 제출 안내 공고

★ 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사전에 물품 규격·거래실례가격 및 계약이행 가능여부 등을 확인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후에 계약 미체결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해양수산과학원 민물고기연구소 2026년 내수면 우량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 쏘가리 구입 단가계약

나. 구매품목 및 수량 ※ 세부사항 규격서 참조

품 명	규 격	기초단가	구매예정량	구매예정금액
쏘가리	전장 3.0cm 이상	1,153원	34,692마리	40,000,000원

다. 기초금액: 1,153원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 ※ 구매수량은 기관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라.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마.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유의사항】

※ 투찰 전 반드시 규격서를 확인하시고 물품에 대한 문의 사항은 해양수산과학원 민물고기연구소(☎061-393-8134)로 확인하신 후 견적제출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견적 제출 일시 및 방법

견적 공고일	견적등록(투찰)		견적 개찰일시
	견적 개시일시	견적 마감일시	
2026. 7. 8.(수)	2026. 7. 10.(금) 09:00	2026. 7. 16.(목) 12:00	2026. 7. 16.(목) 13:00

☞ 유찰시 재입찰: 재입찰에 따른 개찰 2026. 7. 16.(목) 15:00 ~ 17:00 2시간 단위 개찰 실시 ('낙찰하한선 미달' 또는 '예정가격 초과' 로 인한 유찰시 재입찰 추진함)

가. 본 건은 **단가입찰, 제한(소기업·소상공인), 수의계약 견적제출 방식**으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제출 방식이며, 견적제출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을 준용합니다.

다. 한번 제출한 전자 견적서(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견적서(입찰서)가 무효로 처리되면 그 전자견적 제출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견적 제출 자격(아래 각 항목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1)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에 의한 ‘양식업허가증’ 을 소지한 업체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의한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을 소지한 업체
- 2)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 부화지, 치어사육지 등)을 갖춘 자로 납품할 품종의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하고 건강한 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
- 3) ‘종자생산납품확인서’(쏘가리, 2026년도 발급)와 ‘방류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증명서’를 소지하고 이를 제출 가능한 자
-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직접 확인할 예정이며 확인이 불가할 경우 견적제출자에서 제외되오니,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 제출 자격 증빙서류 사전 제출 안내>

▶ 견적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출 자격 관련 증빙서류를 2026. 7. 15.(수) 18:00까지** [직접 제출 / 우편 / 전자메일]* 등의 방법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양수산과학원 민물고기연구소로 제출**하고, ‘적정’ 판정여부를 반드시 사업부서 담당자([☎061-393-8134](tel:061-393-8134))에게 확인받아야 합니다.

* 제출장소: 전남광주 장성군 장성읍 수산길 23-15 / 전자메일: kohm@korea.kr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각 1부
-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1부
- 종자생산납품확인서 각 1부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증빙서류 미제출 업체는 개찰 시 제외할 예정이므로, 서류 도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계약체결 시 서류 원본 제출)

바. **단독수급만 가능**(공동수급체 구성 불가)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날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pm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 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견적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를 계약예정자로 결정하며, 계약예정자를 대상으로 방류수산생물 전염병검사 및 현지 생산시설 확인 후 합격 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불합격 시 차순위 업체 순으로 확인)**
-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예정자를 결정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견적 제출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 가. 본 공고는 견적제출로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받지 않습니다.
- 나. 견적 제출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 다. 무효 견적 제출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을 제출하는 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명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을 제출한 것으로 보고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을 제출하거나, ‘입찰유의서’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제출한 경우에는 향후 3개월간 우리 해양수산과학원에서 실시하는 소액수의견적 제출을 포함한 모든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기타사항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고문, 규격서 등 견적 제출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견적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우리 도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나. 견적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견적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후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라. 계약체결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 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정하는 매입 기준에 따라 해당하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마. 본 견적입찰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바. 기타 물품구매와 관련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양수산과학원 민물고기 연구소(☎061-393-8134)로,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양수산과학원 운영지원과(☎061-550-0633)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과업 내용 확인 미흡으로 인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7. 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양수산과학원 재무관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불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아무런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불임: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양수산과학원 재무관 귀하

※ 1페이지, 2페이지 사이에 간인 필

수의계약 배제사유

-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 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 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 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 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 하였을 때는 조달청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 참가 제한을 받는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처분을 받은 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 상대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 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수 의 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 의 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공사 [] 용역 [] 물품 [] 기타
	수 의 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개인 [] 법인 [] 단체 [] 기타
	연락처	주소	

수 의 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④	발주기관(산하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⑦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⑧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①부터 ⑧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 의 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 의 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예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 의 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양수산과학원 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 업체명: 대표 (인)